

2025년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 사항

이용자, 제공자 및 대리인(보호자)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[목 적]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제2조 [계약기간]

- ① 계약기간은 급여개시일부터 인정서만료일까지로 한다.
-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- ③ ‘을’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‘갑’(또는 ‘병’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은 이후 15일 이내에 ‘을’에게 회신하여야 한다.
-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‘갑’(또는 ‘병’)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.

제3조 [계약자 의무] ‘갑’과 ‘을’ 그리고 ‘병’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① ‘갑’의 의무

- 1. 월 이용료 납부
- 2.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
- 3.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
- 4.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
- 5.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

② ‘을’의 의무

- 1. ‘을’의 건강관리 협조
- 2. ‘갑’의 신변이상을 ‘병’에게 즉시 연락
- 3.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
- 4.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
- 5. 기타 ‘갑’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

③ ‘병’의 의무

- 1. ‘갑’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- 2. ‘갑’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
- 3.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통보
- 4. ‘갑’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‘을’에게 통보
- 5.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

제4조 [계약해지 요건]

① ‘갑’의 해지

- 1. ‘갑’과 ‘병’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‘을’에게 30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② ‘을’의 해지

- 1. ‘갑’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- 2.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- 3. ‘갑’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(단, ‘을’은 ‘갑’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‘갑’또는 ‘병’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)

제5조 [시설관리]

- ①“을”은 보건, 위생,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②’을’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.

제6조 [건강관리]

- ①’을’은 ’갑’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’갑’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’갑’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(교통비, 외 부간병인 등)는 ’갑’또는 ’병’에게 별도 징수한다.
- ④’을’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,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하며, 갑의 건강유지, 악 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⑤’을’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, 투약관리, 욕창관리,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.
- ⑥’을’은 ’갑’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, 이상 시 지체 업이 ’병’에게 통보 한다.
- ⑦’을’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,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.

제7조 [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]

- ①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대리인)의 권리
 - 1. 입소이용계약서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
 - 2.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 - 3. 입소이용계약서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출,조퇴에 관한 권리
 - 4.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 - 5.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- 6.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- 7.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- 8.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 - 9. 시설의 협약,연계병원 외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②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대리인)의 의무
 - 1. 이용자의 건강,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 - 2. 본인일부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
 - 3.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
 - 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통보 의무
 - 5.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소퇴소 절차,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
 - 6. 이용자의 책무로 발생한 시설설비 및 집기비품 등의 파손, 멸실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

※입소시 구비서류

- 1.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이용 계획서
- 2. 건강검진
- 3.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복사본

제8조 [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]

<(안내)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>

구분	시설급여	재가급여
일반	20%	15%
기초수급권자	0%	0%
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	12%	9%
저소득층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,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8%	6%

※[근거규정] 노인장기요양보험법
제40조(본인일부부담금)①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. 다만, 수급자중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
2. 시설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

제9조 [월 이용료 및 비급여 항목]

요양등급	기준일	급여항목				비급여항목
		급여총액(원)	본인부담금(20%)	본인부담금(12%)	본인부담금(8%)	식재료비
1등급	30일	2,580,900	516,180	309,708	206,470	300,000
2등급	30일	2,394,300	478,860	287,316	191,544	300,000
3~5등급	30일	2,260,800	452,160	271,296	180,864	300,000